

전주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20438 판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6. 16

판결 선고 2020.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북 완주군 E 대 422㎡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 2, 3, 4,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7. 전북 완주군 E 대 42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1992 . 8. 1. 전북 완주군 F 지상 세멘트 부력조 세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9.59㎡(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소유 건물이 인접한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참고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자 인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나' 부분 14㎡ 지상에 축조된 건물 부분 을 철거하고,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1973. 4. 5.경부터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주장을 한다.

살피건대,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소유 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는 등 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점유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대 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 한 채 1973. 4.

5.경부터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1. 7. 원 고들 소유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시일인 1973. 4. 5.경으로부터 기산하 여 20년이 경과한 1993. 4. 5.경 원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이후인 2014. 11. 7. 원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 를 끼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민법 242조의 규정이 적용되 므로,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들 소유 토지 위를 침범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들에 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 고,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이격거리 미준 수건물에 대한 인접지소유자의 건물철거인 민법 제2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유진

별지